

2024. 5. 2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5360
상생기반조성팀장	송태림	2133-5489
센터장	장능인	2088-6047
성장지원팀장	이해수	2088-6105
관련 누리집 (메뉴)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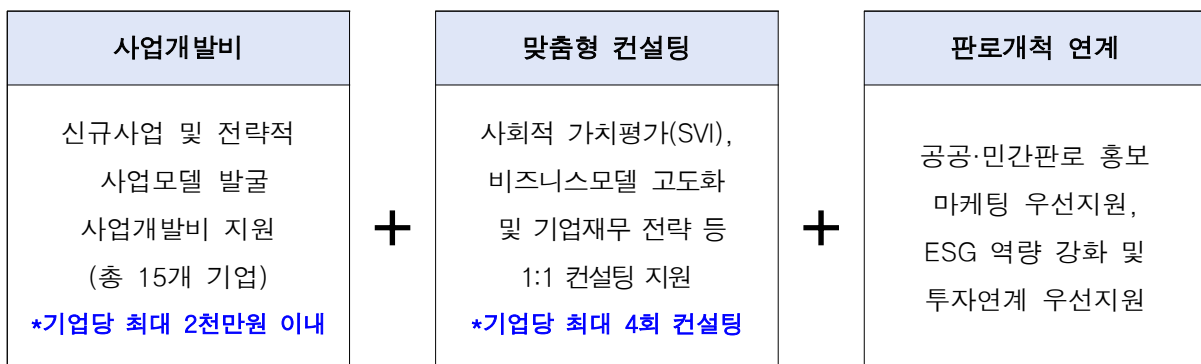
사회적약자·사회문제 해결...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바컨설팅 집중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15개 선발 완료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사업개발비... 시제품 제작,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실질적 활용
- 분야별 전문 컨설팅과 홍보·민간 판로 연계 등... 기업 역량 강화·지속성장 발판 마련
-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수 경영 모델 구축·확산... 경쟁력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 지속지원

장애인·어르신과 같은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서울 소재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해 서울시가 사업개발비부터 컨설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15곳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단지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지원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지원 필요성 ▲기업성장 가능성 ▲혁신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ESG 경영 ▲우수한 사회적가치 모델로서 확장 가능성 ▲이윤의 사회 환원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됐다.
- 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 확대와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제품 인증 등 사업개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판로개척,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기본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도 돕는다.
 - 맞춤형 컨설팅은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판로, 투자, 회계, 법(지적재산권 포함), ESG 등 기업 경영 관련 컨설턴트가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설명회, 함께누리몰(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홍보, 11번가·G마켓·위메프·롯데온 등 민간유통채널 입점 등을 연계한다.



-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장애인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연계, 예술인 종합지원 등 다양하다.
 - **(주식회사 푸들)** 하루에 버려지는 1천만 개의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모여 설립한 기업,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를 활용해 다회용기 디자인·제작 계획이다. ‘다회용기’를 친환경 관점을 넘어,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문화를 제안’ 사업을 설계중이다.
 - **(주)와우키키)** 장애아동들의 언어혼련을 돕는 보조기기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솔루션을 개발중이다. 사업개발비로는 언어발달 장애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 말하기 언어 혼련 서비스를 개발함여 언어발달지연 유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 해 나갈 계획이다.
 -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전문 기자라는 새로운 직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업으로, 이번 사업개발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기자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 **(주)필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방 등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보조 기기 개발 기업으로, 사업개발비를 활용해 정서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역할을 할 ‘반딧불이 조끼’를 개발 예정이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사례 및 우수경영 모델 구축 및 확산 통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15개 선정된 기업 개요

연번	기업(대표자명)	기업소개
1	(주)필덤 (김미경)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가방 등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를 개발
2	한국갭이어 (최다영)	갭이어(GapYear,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통해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 문화를 국내 최초 정의하고, 만들고, 운영해가는 기업
3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 예술인 종합 지원사업 과 공연·전시·음반 제작 등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펼침
4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권은아, 이금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경제적 자립 을 촉진하고, 가정과 직업의 균형 유지 및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지원
5	성문화연구소 리리협동조합 (이수지)	성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교육 환경을 조성
6	주식회사 푸들 (윤채영)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모여 설립한 기업으로, ‘다회용기’를 친환경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문화를 제안’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
7	(주)와우키키 (강예슬)	언어훈련이 삶의 질과 연관되는 장애아동들의 언어훈련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 하여 장애아동들이 성장 후 성인기에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솔루션 개발
8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한정민)	청년주도 생태계 조성, 자립 지원, 역량 강화 를 통한 사회공헌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적극적 정책 제안 및 변화 방향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형성하고,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갈무리하기 위한 전문가 멘토링 제공
9	주식회사 마미품 (최은경)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약자들이 사용하는 경제적부담이 큰 장애인용품 및 실버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제공
10	아리알찬 협동조합 (김숙영)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건강한 아동음식 제공
11	(주)공감만세 (고두환, 이호혁)	지속가능관광,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문제 발굴 및 대안 제시
12	(주)케이엔아츠 (김기범)	9개 언어별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경제가치 창출
13	주식회사 유라이프 (김형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우스키핑, 소식, 이사, 정리수납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기반 통합 주거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음.
14	주식회사 켈코바코리아 (김호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목재문화의 활성화 와 전통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제품 개발
15	(주)피플즈 (김범준)	피가 부족한 환자와 헌혈자를 잇는 공익플랫폼 피플 운영 , 교육 소외 청소년 대상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고 2〉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 맞춤형 컨설팅(사회적가치평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지원)
 - 판로개척 연계지원(센터 판로지원사업에 우선 참가 기회부여)

사업개발비	+	맞춤형 컨설팅	+	판로개척 연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사업개발비 지원 (총 15개 기업)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사회적 가치평가(SVI),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기업재무 전략 등 1:1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4회 컨설팅		공공·민간판로 홍보 마케팅 우선지원, ESG 역량 강화 및 투자연계 우선지원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점(주사무소)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소셜벤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